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제1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9. 08. 30 ~ 09. 13.(15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자 : “붙임” 참조
4. 공시송달 내용

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공시송달하오니,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처 : 양구군청 재정운영과 징수부서 (☎ 033-480-2123, 2292)

2019. 08. 30.

양 구 군

